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2008. 12

한국토지공사

# 목 차

---

##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01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유서 / 01
-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01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02
  - 가. 용도지역 / 02
  - 나. 용도지구 / 03
-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5/,000) / 03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04
-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26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27
  - 가. 주택건설용지 / 27
  - 나. 상업·업무용지 / 44
  -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50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54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55
  - 가. 주택건설용지 / 55
  - 나. 상업·업무용지 / 61
  -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66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76
가. 교통처리계획	/ 76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78
다. 경관에 관한 계획	/ 80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83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 83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92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 97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99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 공간구성에 관한 사항	/ 99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100
다.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103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103

## ■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4,482,827	4,482,827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4,482,82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명지지구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별첨 1-가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용도지역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82,827	-	4,482,827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1,910,409	42.6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96,799	2.2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186,240	4.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795,892	17.7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500,711	11.2	
	준주거지역	-	증)330,767	7.4	
상업 지역	소 계	-	증)1,113,027	24.8	
	중심상업지역	-	증)400,684	8.9	
	일반상업지역	-	증)712,343	15.9	
녹지 지역	소 계	4,482,827	감)3,023,436	32.6	
	자연녹지지역	4,482,827	감)3,023,436	32.6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96,799	·단독주택 등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186,240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795,892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500,711	·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
			준주거지역	330,767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용도지역 지정 ·도시내 지원시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
			중심상업지역	400,684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
			일반상업지역	712,343	·상업 및 업무 수요 수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별첨 1-나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59	37,820	813,774	27	6,937	141,706	105	23,373	511,456	27	7,510	160,612
대로	11	12,108	415,708	1	9,664 (181)	1,430	6	8,519	308,618	4	3,408	105,660
중로	68	17,288	319,381	12	4,897	120,325	38	8,390	145,196	18	4,001	53,860
소로	80	8,424	78,685	14	1,859	19,951	61	6,464	57,642	5	101	1,092

※( )는 지구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9,664 (181)	제74호 광장	송정동 부산시계	일반도로		건고제379호 (81.10.12)	
신설	대로	2	1	34	주간선도로	1,154	광장	대로2-2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2,003	대로2-1	대로1-16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3	34	주간선도로	1,777	대로2-5	대로1-16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4	34	주간선도로	910	대로1-20	대로2-3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5	34	주간선도로	1,987	대로1-20	대로2-1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6	34	주간선도로	688	대로3-2	대로2-5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1	27	보조간선도로	515	대로3-2	대로2-5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2	27	보조간선도로	2,032	대로2-1	대로2-5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3	27	보조간선도로	699	대로2-5	대로2-4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4	27	보조간선도로	162	광장	대로3-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	23	집산도로	1,067	중로1-5	대로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2	23	집산도로	852	중로3-2	대로2-5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3	23	집산도로	93	제4호 연결녹지	대로3-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4	20	집산도로	77	지구계 서측	중로1-5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5	23	집산도로	332	중로1-4	중로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6	23	집산도로	247	중로1-1	대로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7	23	집산도로	245	중로1-2	대로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8	23	집산도로	361	중로1-2	대로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9	23	집산도로	463	대로3-1	대로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0	23	집산도로	478	지구계 동측	대로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1	23	집산도로	465	대로3-3	대로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2	23	집산도로	217	제4호 연결녹지	대로3-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	16	집산도로	383	중로1-4	중로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	16	집산도로	253	중로2-1	중로1-5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3	16	집산도로	162	중로2-4	중로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4	16	집산도로	527	중로1-1	중로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5	18	집산도로	243	중로1-2	대로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6	18	집산도로	391	중로1-2	대로3-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7	18	집산도로	201	중로2-6	중로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8	16	집산도로	178	중로2-9	중로2-9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9	16	집산도로	420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0	18	집산도로	598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1	18	집산도로	503	대로2-5	대로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2	18	집산도로	205	중로2-13	대로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3	18	집산도로	615	중로1-10	대로2-4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4	16	집산도로	407	중로2-13	대로2-4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5	18	집산도로	383	중로1-11	대로2-4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6	18	집산도로	293	중로1-11	대로2-5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7	16	집산도로	201	중로2-16	대로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8	16	집산도로	245	중로2-16	대로3-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9	16	집산도로	187	제4호 연결녹지	대로3-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0	16	집산도로	204	중로2-23	대로3-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1	16	집산도로	245	중로2-23	대로3-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2	16	집산도로	151	소로3-4	대로3-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3	18	집산도로	427	대로3-2	대로2-5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4	18	집산도로	203	중로2-23	대로3-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5	15	집산도로	45	지구계 동측	중로2-14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6	15	특수도로	46	중로2-1	중로2-2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27	15	특수도로	46	중로2-2	중로1-1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28	15	특수도로	138	중로1-1	중로2-29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29	15	특수도로	25	중로2-28	중로2-4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30	15	특수도로	69	중로2-4	대로2-1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31	15	특수도로	50	제1호 연결녹지	중로2-4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32	15	특수도로	64	중로2-4	중로2-3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33	15	특수도로	38	중로2-3	중로2-28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34	15	특수도로	38	중로2-28	중로2-4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35	15	특수도로	65	중로2-4	중로1-5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36	15	특수도로	42	중로1-5	중로2-8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37	15	특수도로	65	중로2-8	중로2-9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2	38	15	특수도로	40	중로2-9	제4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신설	중로	3	1	13	집산도로	467	중로2-1	중로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2	13	집산도로	362	대로2-5	대로2-2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3	13	집산도로	283	중로1-10	대로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4	13	집산도로	189	제8호 완충녹지	중로3-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5	13	집산도로	126	중로3-6	중로1-10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6	13	집산도로	240	제7호 완충녹지	중로2-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7	13	집산도로	93	소로2-12	중로2-1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8	13	집산도로	153	지구계 동측	대로2-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9	13	집산도로	213	중로3-8	중로2-1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	13	집산도로	276	소로2-17	중로3-8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1	13	집산도로	245	중로2-15	대로3-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2	13	집산도로	229	중로3-14	대로3-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3	13	집산도로	213	중로3-14	대로3-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4	13	집산도로	361	소로1-2	중로1-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5	13	집산도로	91	소로2-54	중로2-2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6	13	집산도로	126	중로3-17	대로3-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7	13	집산도로	314	중로2-22	대로3-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8	13	집산도로	28	제4호 연결녹지	중로3-1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73	지구계 동측	중로2-1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247	중로3-14	대로3-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186	소로1-6	소로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64	소로1-7	소로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36	소로2-51	소로1-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	10	국지도로	140	소로1-2	중로3-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	10	국지도로	140	소로1-2	중로3-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8	10	국지도로	62	중로3-13	중로1-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	10	국지도로	111	소로1-11	대로3-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9	중로1-12	중로1-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1	10	국지도로	238	중로2-19	중로1-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2	10	국지도로	240	중로2-19	중로1-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3	10	국지도로	99	중로3-16	중로2-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54	중로3-17	중로3-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104	소로2-3	소로2-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104	소로2-4	소로2-3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77	소로2-4	종로3-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386	종로3-1	종로3-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498	종로3-3	종로3-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207	소로2-5	종로3-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7	8	국지도로	42	소로2-6	소로2-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51	소로2-5	소로2-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	8	국지도로	107	소로2-10	종로3-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0	8	국지도로	204	종로3-3	종로3-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1	8	국지도로	221	종로3-6	종로3-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2	8	국지도로	337	종로2-14	종로2-1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3	8	국지도로	103	소로2-12	종로3-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4	8	국지도로	104	소로2-12	종로3-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5	8	국지도로	261	종로3-9	종로3-9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95	소로2-15	소로2-1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7	8	국지도로	196	종로3-10	종로3-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	8	국지도로	87	지구계 동측	종로3-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9	8	국지도로	112	소로1-3	소로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0	8	국지도로	112	소로1-4	소로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1	8	국지도로	112	소로1-5	소로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2	8	국지도로	99	종로3-16	종로2-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3	8	국지도로	99	종로3-16	종로2-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4	8	국지도로	51	소로1-14	종로3-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5	8	국지도로	131	소로2-26	소로2-2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6	8	국지도로	193	종로3-15	종로2-2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7	8	특수도로	49	제1호 연결 녹지	종로2-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8	8	특수도로	48	종로2-5	소로2-29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9	8	특수도로	242	대로2-1	종로1-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30	8	특수도로	104	종로2-6	종로2-7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31	8	특수도로	97	종로1-2	소로2-30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32	8	특수도로	97	소로2-30	종로2-6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33	8	특수도로	101	종로2-11	소로2-34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34	8	특수도로	215	종로2-11	대로2-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35	8	특수도로	239	대로2-5	종로1-9	보행자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6	8	특수도로	25	제2호 어린이공원	소로2-37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37	8	특수도로	303	중로1-9	대로3-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38	8	특수도로	33	대로2-3	소로2-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39	8	특수도로	30	대로2-3	소로2-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0	8	특수도로	10	소로2-5	지구계 동측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1	8	특수도로	10	소로2-5	지구계 동측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2	8	특수도로	30	대로2-3	소로2-10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3	8	특수도로	40	중로3-3	소로2-9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4	8	특수도로	40	소로2-9	소로2-10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5	8	특수도로	30	소로2-10	중로1-10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6	8	특수도로	23	중로3-9	대로2-4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7	8	특수도로	20	중로3-10	제4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8	8	특수도로	23	대로2-4	소로1-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49	8	특수도로	23	대로2-4	소로1-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0	8	특수도로	18	소로1-3	중로3-1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1	8	특수도로	15	소로1-5	중로3-14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2	8	특수도로	203	대로2-3	중로2-1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3	8	특수도로	18	중로3-17	제4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4	8	특수도로	153	중로3-15	대로3-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5	8	특수도로	23	중로2-23	소로2-2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6	8	특수도로	22	소로2-26	대로3-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7	8	특수도로	17	제1호 근린공원	중로3-1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8	8	특수도로	20	중로3-1	소로2-4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59	8	특수도로	17	제1호 근린공원	중로3-1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60	8	특수도로	26	소로2-4	중로1-1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61	8	특수도로	20	소로2-4	제1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1	6	특수도로	24	소로2-11	지구계 동측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2	6	특수도로	24	소로2-15	중로3-8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3	6	특수도로	17	중로3-8	소로2-17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4	6	특수도로	21	중로2-22	제4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	5	6	특수도로	15	소로2-25	제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폐지	소로	3	75	6	국지도로	553	명지동 2095-2	명지동 2024-1	일반도로		강서구 고시 2003-26 (03.04.04)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2-1호선	신설, 폭원:34m, 연장:1,154m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망계획반영
-	대로2-2호선	신설, 폭원:30m, 연장:2,003m	
-	대로2-3호선	신설, 폭원:34m, 연장:1,777m	
-	대로2-4호선	신설, 폭원:34m, 연장:910m	
-	대로2-5호선	신설, 폭원:34m, 연장:1,987m	
-	대로2-6호선	신설, 폭원:34m, 연장:688m	
-	대로3-1호선	신설, 폭원:27m, 연장:515m	
-	대로3-2호선	신설, 폭원:27m, 연장:2,032m	
-	대로3-3호선	신설, 폭원:27m, 연장:699m	
-	대로3-4호선	신설, 폭원:27m, 연장:162m	
-	중로1-1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1,067m	
-	중로1-2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852m	
-	중로1-3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93m	
-	중로1-4호선	신설, 폭원:20m, 연장:77m	
-	중로1-5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332m	
-	중로1-6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247m	
-	중로1-7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245m	
-	중로1-8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361m	
-	중로1-9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463m	
-	중로1-10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478m	
-	중로1-11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465m	
-	중로1-12호선	신설, 폭원:23m, 연장:217m	
-	중로2-1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383m	
-	중로2-2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253m	
-	중로2-3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162m	
-	중로2-4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527m	
-	중로2-5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243m	
-	중로2-6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391m	
-	중로2-7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201m	
-	중로2-8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178m	
-	중로2-9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420m	
-	중로2-10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598m	
-	중로2-11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503m	
-	중로2-12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205m	
-	중로2-13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615m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14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407m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망계획반영
-	중로2-15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383m	
-	중로2-16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293m	
-	중로2-17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201m	
-	중로2-18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245m	
-	중로2-19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187m	
-	중로2-20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204m	
-	중로2-21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245m	
-	중로2-22호선	신설, 폭원:16m, 연장:151m	
-	중로2-23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427m	
-	중로2-24호선	신설, 폭원:18m, 연장:203m	
-	중로2-25호선	신설, 폭원:15m, 연장:45m	
-	중로2-26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46m	
-	중로2-27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46m	
-	중로2-28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138m	
-	중로2-29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25m	
-	중로2-30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69m	
-	중로2-31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50m	
-	중로2-32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64m	
-	중로2-33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38m	
-	중로2-34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38m	
-	중로2-35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65m	
-	중로2-36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42m	
-	중로2-37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65m	
-	중로2-38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15m, 연장:40m	
-	중로3-1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467m	
-	중로3-2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362m	
-	중로3-3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283m	
-	중로3-4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189m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5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126m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망계획반영
-	중로3-6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240m	
-	중로3-7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93m	
-	중로3-8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153m	
-	중로3-9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213m	
-	중로3-10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276m	
-	중로3-11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245m	
-	중로3-12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229m	
-	중로3-13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213m	
-	중로3-14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361m	
-	중로3-15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91m	
-	중로3-16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126m	
-	중로3-17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314m	
-	중로3-18호선	신설, 폭원:13m, 연장:28m	
-	소로1-1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73m	
-	소로1-2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247m	
-	소로1-3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186m	
-	소로1-4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64m	
-	소로1-5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36m	
-	소로1-6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140m	
-	소로1-7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140m	
-	소로1-8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62m	
-	소로1-9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111m	
-	소로1-10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69m	
-	소로1-11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238m	
-	소로1-12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240m	
-	소로1-13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99m	
-	소로1-14호선	신설, 폭원:10m, 연장:154m	
-	소로2-1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04m	
-	소로2-2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04m	
-	소로2-3호선	신설, 폭원:8m, 연장:77m	
-	소로2-4호선	신설, 폭원:8m, 연장:386m	
-	소로2-5호선	신설, 폭원:8m, 연장:498m	
-	소로2-6호선	신설, 폭원:8m, 연장:207m	
-	소로2-7호선	신설, 폭원:8m, 연장:42m	
-	소로2-8호선	신설, 폭원:8m, 연장:51m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9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07m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망계획반영
-	소로2-10호선	신설, 폭원:8m, 연장:204m	
-	소로2-11호선	신설, 폭원:8m, 연장:221m	
-	소로2-12호선	신설, 폭원:8m, 연장:337m	
-	소로2-13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03m	
-	소로2-14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04m	
-	소로2-15호선	신설, 폭원:8m, 연장:261m	
-	소로2-16호선	신설, 폭원:8m, 연장:95m	
-	소로2-17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96m	
-	소로2-18호선	신설, 폭원:8m, 연장:87m	
-	소로2-19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12m	
-	소로2-20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12m	
-	소로2-21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12m	
-	소로2-22호선	신설, 폭원:8m, 연장:99m	
-	소로2-23호선	신설, 폭원:8m, 연장:99m	
-	소로2-24호선	신설, 폭원:8m, 연장:51m	
-	소로2-25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31m	
-	소로2-26호선	신설, 폭원:8m, 연장:193m	
-	소로2-27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49m	
-	소로2-28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48m	
-	소로2-29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42m	
-	소로2-30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04m	
-	소로2-31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97m	
-	소로2-32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97m	
-	소로2-33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01m	
-	소로2-34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15m	
-	소로2-35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39m	
-	소로2-36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5m	
-	소로2-37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303m	
-	소로2-38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33m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39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30m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망계획반영
-	소로2-40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0m	
-	소로2-41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0m	
-	소로2-42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30m	
-	소로2-43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40m	
-	소로2-44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40m	
-	소로2-45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30m	
-	소로2-46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3m	
-	소로2-47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0m	
-	소로2-48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3m	
-	소로2-49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3m	
-	소로2-50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8m	
-	소로2-51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5m	
-	소로2-52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03m	
-	소로2-53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8m	
-	소로2-54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53m	
-	소로2-55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3m	
-	소로2-56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2m	
-	소로2-57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7m	
-	소로2-58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0m	
-	소로2-59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17m	
-	소로2-60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6m	
-	소로2-61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8m, 연장:20m	
-	소로3-1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6m, 연장:24m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2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6m, 연장:24m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망계획반영
-	소로3-3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6m, 연장:17m	
-	소로3-4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6m, 연장:21m	
-	소로3-5호선	신설, 보행자도로 폭원:6m, 연장:15m	

## 2) 주차장

### ■ 주차장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개소		-	31,111	31,111	-	
신설	1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011일원	-	1,023	1,023	-	
신설	2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024-2일원	-	1,658	1,658	-	
신설	3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039일원	-	2,493	2,493	-	
신설	4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962일원	-	3,233	3,233	-	
신설	5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113-2일원	-	2,284	2,284	-	
신설	6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842-1일원	-	4,662	4,662	-	
신설	7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517-3일원	-	339	339	-	
신설	8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514-1일원	-	390	390	-	
신설	9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562-1일원	-	747	747	-	
신설	10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598-4일원	-	422	422	-	
신설	11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677-2일원	-	1,794	1,794	-	
신설	12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668일원	-	1,794	1,794	-	
신설	13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595-4일원	-	1,142	1,142	-	
신설	14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623-3일원	-	1,215	1,215	-	
신설	15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	687	687	-	
신설	16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	687	687	-	
신설	17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321-1일원	-	951	951	-	
신설	18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297-21일원	-	795	795	-	
신설	19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086-4일원	-	538	538	-	
신설	20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021-3일원	-	1,680	1,680	-	
신설	21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40-2일원	-	949	949	-	
신설	22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80-2일원	-	835	835	-	
신설	23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75-2일원	-	793	793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1,023㎡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2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1,658㎡	
3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2,493㎡	
4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3,233㎡	
5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2,284㎡	
6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4,662㎡	
7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339㎡	
8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390㎡	
9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747㎡	
10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422㎡	
11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1,794㎡	
12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1,794㎡	
13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1,142㎡	
14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1,215㎡	
15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687㎡	
16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687㎡	
17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951㎡	
18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795㎡	
19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538㎡	
20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1,680㎡	
21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949㎡	
22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835㎡	
23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793㎡	

나. 공간시설

1) 광 장

■ 광장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19,509	19,509	-	
신설	1	광장	일반광장	강서구 명지동 2012일원	-	1,023	1,023	-	
신설	2	광장	일반광장	강서구 명지동 2033-7일원	-	16,239	16,239	-	
신설	3	광장	일반광장	강서구 명지동 367-3일원	-	2,247	2,247	-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	일반광장 신설 면적 : 1,023㎡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2	광장	일반광장 신설 면적 : 16,239㎡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3	광장	일반광장 신설 면적 : 2,247㎡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 2) 녹지

### ■ 녹지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면 적 (㎡)	비 고
합 계	14	606,633	
경관녹지	2	65,260	
연결녹지	4	412,691	
완충녹지	8	128,682	

### ■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개소	-	606,633	606,633	-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강서구 명지동 1866-15일원	-	36,418	36,418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강서구 명지동 862-3일원	-	28,842	28,842	-	
신설	1	녹지	연결녹지	강서구 명지동 2111-1일원	-	20,323	20,323	-	
신설	2	녹지	연결녹지	강서구 명지동 1981-1일원	-	25,749	25,749	-	
신설	3	녹지	연결녹지	강서구 명지동 1653일원	-	14,727	14,727	-	
신설	4	녹지	연결녹지	강서구 명지동 2755-6일원	-	351,892	351,892	-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	7,224	7,224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 명지동 2075-8일원	-	4,086	4,086	-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 명지동 2825일원	-	3,112	3,112	-	
신설	4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 명지동 2457일원	-	37,289	37,289	-	
신설	5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 명지동 1627-3일원	-	19,841	19,841	-	
신설	6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 명지동 1118-3일원	-	13,795	13,795	-	
신설	7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 명지동 1102-1일원	-	34,218	34,218	-	
신설	8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 명지동 279-1일원	-	9,117	9,117	-	

■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경관녹지 신설 면적 : 36,418㎡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2	녹지	경관녹지 신설 면적 : 28,842 m <sup>2</sup>	
1	녹지	연결녹지 신설 면적 : 20,323㎡	
2	녹지	연결녹지 신설 면적 : 25,749 m <sup>2</sup>	
3	녹지	연결녹지 신설 면적 : 14,727㎡	
4	녹지	연결녹지 신설 면적 : 351,892 m <sup>2</sup>	
1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7,224㎡	
2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4,086㎡	
3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112㎡	
4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7,289㎡	
5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9,841	
6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3,795㎡	
7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4,218 m <sup>2</sup>	
8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9,117 m <sup>2</sup>	

### 3) 공원

#### ■ 공원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합 계	9	841,013	
근린공원	2	824,440	
어린이공원	7	16,573	

####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841,013	841,013	-	
신설	1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서구 명지동 630-1일원	-	807,013	807,013	-	
신설	2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서구 명지동 2807-2일원	-	17,427	17,427	-	
신설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2241일원	-	6,013	6,013	-	
신설	2	제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2418-1일원	-	1,771	1,771	-	
신설	3	제3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2517-2일원	-	1,560	1,560	-	
신설	4	제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1172일원	-	1,550	1,550	-	
신설	5	제5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1318-1일원	-	1,974	1,974	-	
신설	6	제6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1063-5일원	-	2,192	2,192	-	
신설	7	제7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247-5일원	-	1,513	1,513	-	



■ 공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면적 : 807,013m <sup>2</sup>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2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면적 : 17,427m <sup>2</sup>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6,013m <sup>2</sup>	
2	제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771m <sup>2</sup>	
3	제3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560m <sup>2</sup>	
4	제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550m <sup>2</sup>	
5	제5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974m <sup>2</sup>	
6	제6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2,192m <sup>2</sup>	
7	제7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513m <sup>2</sup>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36,308	36,308	-	
신설	1	열공급 설비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	36,308	36,308	-	

■ 열공급설비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신설 면적 : 36,308㎡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2)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3,909	3,909	-	
신설	1	전기 공급설비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	3,909	3,909	-	

■ 전기공급설비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신설 면적 : 3,909㎡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20,927	20,927	-	
신설	1	공공청사		강서구 명지동 607-5일원	-	10,016	10,016	-	
신설	2	공공청사		강서구 명지동 977-12일원	-	7,332	7,332	-	
신설	3	공공청사		강서구 명지동 243-5일원	-	3,579	3,579	-	

■ 공공청사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신설 면적 : 10,016㎡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2	공공청사	신설 면적 : 7,332㎡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3	공공청사	신설 면적 : 3,579㎡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 2) 학교

### ■ 학교 총괄표

구분	시설수	면적(㎡)	비고
합계	10	125,755	
초등학교	4	50,838	
중학교	3	38,610	
고등학교	3	36,307	

### ■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25,755	125,755	-	
신설	1	학교	초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1760-7일원	-	12,862	12,862	-	
신설	2	학교	초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2433-4일원	-	13,053	13,053	-	
신설	3	학교	초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1229-11일원	-	12,286	12,286	-	
신설	4	학교	초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1016-4일원	-	12,637	12,637	-	
신설	5	학교	중학교	강서구 명지동 2547일원	-	12,489	12,489	-	
신설	6	학교	중학교	강서구 명지동 1604일원	-	12,695	12,695	-	
신설	7	학교	중학교	강서구 명지동 1082-9일원	-	13,426	13,426	-	
신설	8	학교	고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2442-3일원	-	13,968	13,968	-	
신설	9	학교	고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1278-6일원	-	13,299	13,299	-	
변경	가	학교	고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299일원	32,737	감)6,148	26,589	85.08.21 (부고 1995-245)	

■ 학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초등학교 신설 면적 : 12,862㎡	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반영
2	학교	초등학교 신설 면적 : 13,053㎡	
3	학교	초등학교 신설 면적 : 12,286㎡	
4	학교	초등학교 신설 면적 : 12,637㎡	
5	학교	중학교 신설 면적 : 12,489㎡	
6	학교	중학교 신설 면적 : 12,695㎡	
7	학교	중학교 신설 면적 : 13,426㎡	
8	학교	고등학교 신설 면적 : 13,968㎡	
9	학교	고등학교 신설 면적 : 13,299㎡	
가	학교	고등학교 위치, 면적 변경 기정 : 32,727㎡ 변경 : 26,589㎡ (감:6,148㎡)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별첨 1-다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주택건설용지

##### 1) 단독주택 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76,527	
H	소 계		-	-	72,623	
H1	-	24,895	1	강서구 명지동 2009-6일원	24,895	블록형단독주택 (외국인 임대주택)
H2	-	9,971	1	강서구 명지동 1598일원	9,971	
H3	-	5,004	1	강서구 명지동 1601-3일원	5,004	
H4	-	9,812	1	강서구 명지동 1603-2일원	9,812	
H5	-	7,429	1	강서구 명지동 1318-5일원	7,429	
H6	-	5,732	1	강서구 명지동 1021-2일원	5,732	
H7	-	5,355	1	강서구 명지동 292일원	5,355	
H8	-	4,425	1	강서구 명지동 285-4일원	4,425	
D	소 계		-	-	103,904	
D1	①	2,333	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90	
			2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92	
			3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92	
			4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92	
			5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91	
			6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91	
			7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91	
			8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94	
	②	2,267	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86	
			2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83	
			3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83	
			4	강서구 명지동 2015-1일원	283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1	②	2,267	5	강서구 명지동 2015-1일원	283	
			6	강서구 명지동 2018-2일원	283	
			7	강서구 명지동 2018-2일원	283	
			8	강서구 명지동 2026일원	283	
	③	678	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329	
			2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349	
	④	2,966	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6	
			2	강서구 명지동 2009-2일원	260	
			3	강서구 명지동 2009-2일원	260	
			4	강서구 명지동 2009-2일원	392	
			5	강서구 명지동 2009-2일원	256	
			6	강서구 명지동 2009-2일원	256	
			7	강서구 명지동 2009-2일원	256	
			8	강서구 명지동 2075-8일원	256	
			9	강서구 명지동 2010-1일원	256	
			10	강서구 명지동 2010-1일원	256	
			11	강서구 명지동 2013일원	262	
	⑤	3,570	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48	
			2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3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4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5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6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8		
7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43		
8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48		
9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8		
10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1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12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13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14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43		
⑥	2,548	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47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1	⑥	2,548	2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3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4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5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0	
			6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6	
			7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8	
			8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9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59	
			10	강서구 명지동 2009-2일원	241	
			⑦	2,563	1	강서구 명지동 2015-4일원
	2	강서구 명지동 2015-3일원			259	
	3	강서구 명지동 2015-2일원			259	
	4	강서구 명지동 2029-4일원			258	
	5	강서구 명지동 2029-4일원			241	
	6	강서구 명지동 2029-2일원			241	
	7	강서구 명지동 2029-2일원			258	
	8	강서구 명지동 2015-2일원			259	
	9	강서구 명지동 2015-2일원			259	
	10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62	
	⑧	3,560	1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45	
			2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8	
			3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9	
			4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9	
			5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9	
			6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9	
			7	강서구 명지동 2029-2일원	243	
			8	강서구 명지동 2057일원	243	
			9	강서구 명지동 2074일원	259	
			10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9	
			11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9	
			12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9	
			13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9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1	⑧	3,560	14	강서구 명지동 2013일원	240	
	⑨	684	1	강서구 명지동 2029-3일원	339	
			2	강서구 명지동 2029-1일원	345	
	㉞	2,951	1	강서구 명지동 2013일원	245	
			2	강서구 명지동 2010-1일원	256	
			3	강서구 명지동 2074일원	256	
			4	강서구 명지동 2074일원	256	
			5	강서구 명지동 2074일원	256	
			6	강서구 명지동 2059일원	256	
			7	강서구 명지동 2061일원	256	
			8	강서구 명지동 2052일원	390	
			9	강서구 명지동 2057일원	260	
			10	강서구 명지동 2057일원	260	
			11	강서구 명지동 2056일원	260	
D2	①	1,574	1	강서구 명지동 2584-4일원	259	
			2	강서구 명지동 2580-4일원	264	
			3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64	
			4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64	
			5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264	
			6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59	
	②	2,650	1	강서구 명지동 2580-4일원	268	
			2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63	
			3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63	
			4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263	
			5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268	
			6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268	
			7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263	
			8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63	
			9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63	
			10	강서구 명지동 2580-4일원	268	
	③	2,650	1	강서구 명지동 2580-3일원	268	
			2	강서구 명지동 2577-3일원	263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2	③	2,650	3	강서구 명지동 2577-3일원	263			
			4	강서구 명지동 2577-3일원	263			
			5	강서구 명지동 2576-3일원	268			
			6	강서구 명지동 2576-3일원	268			
			7	강서구 명지동 2577-2일원	263			
			8	강서구 명지동 2577-2일원	263			
			9	강서구 명지동 2577-2일원	263			
			10	강서구 명지동 2580-1일원	268			
			④	1,741	1	강서구 명지동 2571일원	271	
					2	강서구 명지동 2571일원	277	
	3	강서구 명지동 2568-1일원			277			
	4	강서구 명지동 2568-1일원			277			
	5	강서구 명지동 2567-3일원			290			
	6	강서구 명지동 2567-3일원			349			
	⑤	2,838	1	강서구 명지동 2572-1일원	346			
			2	강서구 명지동 2573-1일원	330			
			3	강서구 명지동 2576-3일원	330			
			4	강서구 명지동 2576-3일원	346			
			5	강서구 명지동 2573-1일원	294			
			6	강서구 명지동 2573-4일원	315			
			7	강서구 명지동 2573-4일원	475			
			8	강서구 명지동 2575-3일원	402			
	D3	①	3,097	1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7		
				2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3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4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5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6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6		
7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6			
8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9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10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3	①	3,097	11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12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6	
	②	2,410	1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3	
			2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2	
			3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2	
			4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2	
			5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36	
			6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36	
			7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2	
			8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2	
			9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2	
			10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3	
	③	3,097	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7	
			2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3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4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5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6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6	
			7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56	
			8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59	
			9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10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1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12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6	
	④	3,097	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7	
			2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3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4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59	
			5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59	
			6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56	
			7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56	
			8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59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3	④	3,097	9	강서구 명지동 1229-13일원	259	
			10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1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9	
			12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6	
	⑤	2,409	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43	
			2	강서구 명지동 1229-13일원	242	
			3	강서구 명지동 1229-13일원	242	
			4	강서구 명지동 1229-14일원	242	
			5	강서구 명지동 1229-7일원	236	
			6	강서구 명지동 1229-7일원	236	
			7	강서구 명지동 1229-14일원	242	
			8	강서구 명지동 1229-14일원	242	
			9	강서구 명지동 1229-13일원	242	
			10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42	
	⑥	2,572	1	강서구 명지동 1227-4일원	266	
			2	강서구 명지동 1227-4일원	287	
			3	강서구 명지동 1227-4일원	273	
			4	강서구 명지동 1227-4일원	248	
			5	강서구 명지동 1227-4일원	313	
			6	강서구 명지동 1228일원	314	
			7	강서구 명지동 1229-5일원	290	
			8	강서구 명지동 1235일원	302	
			9	강서구 명지동 1234일원	279	
	⑦	1,176	1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97	
			2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97	
			3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97	
			4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85	
	⑧	1,128	1	강서구 명지동 1229-10일원	276	
2			강서구 명지동 1229-10일원	288		
3			강서구 명지동 1229-12일원	288		
4			강서구 명지동 1229-6일원	276		
⑨	876	1	강서구 명지동 1229-7일원	275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3	⑨	876	2	강서구 명지동 1229-8일원	288	
			3	강서구 명지동 1232일원	313	
D4	①	3,781	1	강서구 명지동 1318-3일원	338	
			2	강서구 명지동 1318-3일원	343	
			3	강서구 명지동 1318-2일원	343	
			4	강서구 명지동 1297-22일원	343	
			5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338	
			6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95	
			7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97	
			8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97	
			9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97	
			10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97	
			11	강서구 명지동 1318-6일원	297	
			12	강서구 명지동 1318-4일원	296	
	②	2,598	1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61	
			2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61	
			3	강서구 명지동 1326-1일원	261	
			4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61	
			5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55	
			6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55	
			7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61	
			8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61	
			9	강서구 명지동 1327일원	261	
			10	강서구 명지동 1327일원	261	
	③	1,899	1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74	
			2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86	
			3	강서구 명지동 1320-1일원	264	
			4	강서구 명지동 1320-1일원	270	
			5	강서구 명지동 1320-1일원	270	
			6	강서구 명지동 1320-4일원	270	
			7	강서구 명지동 1320-3일원	265	
	④	4,228	1	강서구 명지동 1315일원	251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4	④	4,228	2	강서구 명지동 1314-3일원	311	
			3	강서구 명지동 1314-2일원	313	
			4	강서구 명지동 1314-1일원	256	
			5	강서구 명지동 1293-12일원	365	
			6	강서구 명지동 1293-12일원	270	
			7	강서구 명지동 1293-12일원	270	
			8	강서구 명지동 1296-3일원	277	
			9	강서구 명지동 1296-3일원	271	
			10	강서구 명지동 1296-3일원	271	
			11	강서구 명지동 1297-6일원	271	
			12	강서구 명지동 1311-2일원	271	
			13	강서구 명지동 1311-2일원	287	
			14	강서구 명지동 1311-2일원	270	
			15	강서구 명지동 1308일원	274	
			⑤	4,176	1	강서구 명지동 1297-13일원
	2	강서구 명지동 1297-13일원			277	
	3	강서구 명지동 1313일원			264	
	4	강서구 명지동 1313일원			267	
	5	강서구 명지동 1312일원			266	
	6	강서구 명지동 1312일원			323	
	7	강서구 명지동 1311-4일원			329	
	8	강서구 명지동 1311-4일원			329	
	9	강서구 명지동 1311-2일원			354	
	10	강서구 명지동 1312일원			319	
	11	강서구 명지동 1297-8일원			322	
	12	강서구 명지동 1297-8일원			282	
	13	강서구 명지동 1297-8일원			277	
	14	강서구 명지동 1314-2일원			278	
	⑥	1,931	1	강서구 명지동 1321-6일원	266	
			2	강서구 명지동 1321-7일원	274	
			3	강서구 명지동 1321-7일원	274	
			4	강서구 명지동 1321-3일원	274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4	⑥	1,931	5	강서구 명지동 1321-3일원	274	
			6	강서구 명지동 1225일원	274	
			7	강서구 명지동 1224일원	295	
D5	①	3,223	1	강서구 명지동 1082-14일원	261	
			2	강서구 명지동 1082-14일원	286	
			3	강서구 명지동 1083-2일원	323	
			4	강서구 명지동 1086-1일원	368	
			5	강서구 명지동 1086-1일원	395	
			6	강서구 명지동 1086-2일원	392	
			7	강서구 명지동 1086-3일원	334	
			8	강서구 명지동 1338-11일원	273	
			9	강서구 명지동 1338-11일원	289	
			10	강서구 명지동 1338-10일원	302	
	②	2,248	1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90	
			2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78	
			3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78	
			4	강서구 명지동 1094-2일원	277	
			5	강서구 명지동 1094-1일원	277	
			6	강서구 명지동 1094-1일원	278	
			7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78	
			8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92	
	③	978	1	강서구 명지동 1086-6일원	246	
			2	강서구 명지동 1086-6일원	252	
			3	강서구 명지동 1086-6일원	243	
			4	강서구 명지동 1086-6일원	237	
	④	1,308	1	강서구 명지동 1086-5일원	220	
			2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20	
			3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13	
			4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15	
			5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20	
			6	강서구 명지동 1086-4일원	220	
	⑤	2,167	1	강서구 명지동 1338-12일원	281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5	⑤	2,167	2	강서구 명지동 1338-12일원	336	
			3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317	
			4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54	
			5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38	
			6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38	
			7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48	
			8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55	
D6	①	2,592	1	강서구 명지동 377-1일원	354	
			2	강서구 명지동 377-1일원	280	
			3	강서구 명지동 367-4일원	280	
			4	강서구 명지동 367-4일원	326	
			5	강서구 명지동 368-2일원	264	
			6	강서구 명지동 373-1일원	264	
			7	강서구 명지동 373-1일원	264	
			8	강서구 명지동 369-3일원	264	
			9	강서구 명지동 369-3일원	296	
	②	1,592	1	강서구 명지동 378-2일원	272	
			2	강서구 명지동 285-1일원	264	
			3	강서구 명지동 285-1일원	264	
			4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64	
			5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64	
			6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64	
	③	1,927	1	강서구 명지동 282일원	274	
			2	강서구 명지동 282일원	274	
			3	강서구 명지동 278일원	274	
			4	강서구 명지동 278일원	274	
			5	강서구 명지동 278일원	274	
			6	강서구 명지동 279-1일원	274	
			7	강서구 명지동 279-1일원	283	
	④	3,172	1	강서구 명지동 376일원	271	
			2	강서구 명지동 285-3일원	265	
			3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65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6	④	3,172	4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65	
			5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65	
			6	강서구 명지동 288일원	258	
			7	강서구 명지동 288일원	258	
			8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65	
			9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65	
			10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65	
			11	강서구 명지동 285-3일원	265	
			12	강서구 명지동 375-3일원	265	
	⑤	3,249	1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47	
			2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76	
			3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76	
			4	강서구 명지동 281일원	275	
			5	강서구 명지동 280-1일원	275	
			6	강서구 명지동 280-1일원	275	
			7	강서구 명지동 291-3일원	275	
			8	강서구 명지동 291-1일원	275	
			9	강서구 명지동 291-1일원	275	
			10	강서구 명지동 281일원	276	
			11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76	
			12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48	
	⑥	1,751	1	강서구 명지동 254-3일원	284	
			2	강서구 명지동 254-3일원	290	
			3	강서구 명지동 254-4일원	290	
			4	강서구 명지동 257-2일원	290	
			5	강서구 명지동 257-2일원	290	
			6	강서구 명지동 257-2일원	307	
	⑦	1,683	1	강서구 명지동 252일원	281	
			2	강서구 명지동 252일원	280	
			3	강서구 명지동 252일원	281	
			4	강서구 명지동 253일원	282	
			5	강서구 명지동 253일원	280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6	⑦	1,683	6	강서구 명지동 253일원	279	
	⑧	1,683	1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1	
			2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0	
			3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1	
			4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2	
			5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0	
			6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79	
	⑨	2,283	1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2	
			2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0	
			3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0	
			4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96	
			5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304	
			6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0	
			7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0	
			8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28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후 2개 필지로 분할은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합병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및 연접한 3개필지 합병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만 허용. 보행자도로가 사이에 있는 필지간의 합병은 불허)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 내용 준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분할은 시행지침 참조

2) 공동주택 용지

가 구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734,733	
A1	A1	강서구 명지동 2371-6일원	82,380	
A2	A2	강서구 명지동 2450일원	37,912	
A3	A3	강서구 명지동 2541-1일원	41,849	
B1	B1	강서구 명지동 1817일원	59,036	
B2	B2	강서구 명지동 1649-2일원	51,078	
B3	B3	강서구 명지동 1187-11일원	38,961	
B4	B4	강서구 명지동 1183-2일원	37,012	
C1	C1	강서구 명지동 1957-9일원	39,222	
C2	C2	강서구 명지동 2404-1일원	38,069	
C3	C3	강서구 명지동 2488일원	33,992	
C4	C4	강서구 명지동 1692-1일원	40,390	
C5	C5	강서구 명지동 1155일원	33,005	
C6	C6	강서구 명지동 1131-1일원	30,155	
C7	C7	강서구 명지동 1099-9일원	60,579	
C8	C8	강서구 명지동 1003일원	48,122	
E1	E1	강서구 명지동 1090일원	31,331	연립주택
E2	E2	강서구 명지동 1011-2일원	13,094	연립주택
E3	E3	강서구 명지동 1435-16일원	18,546	연립주택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3) 근린생활시설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45,475	
근생1	1,888	1	강서구 명지동 2494-3일원	474	
		2	강서구 명지동 2505-2일원	483	
		3	강서구 명지동 2520-2일원	483	
		4	강서구 명지동2518-2일원	448	
근생2	1,630	1	강서구 명지동 2505-3일원	403	
		2	강서구 명지동 2506일원	402	
		3	강서구 명지동 2508일원	403	
		4	강서구 명지동 2509-3일원	422	
근생3	2,558	1	강서구 명지동2575-1일원	490	
		2	강서구 명지동 2575-5일원	534	
		3	강서구 명지동 2574-4일원	597	
		4	강서구 명지동 2573-3일원	476	
		5	강서구 명지동 2566일원	461	
근생4	4,135	1	강서구 명지동 2597-2일원	350	
		2	강서구 명지동 2599일원	339	
		3	강서구 명지동 2599일원	448	
		4	강서구 명지동 2600-2일원	413	
		5	강서구 명지동 2603일원	540	
		6	강서구 명지동 2604-2일원	520	
		7	강서구 명지동 2565일원	520	
		8	강서구 명지동 2565일원	496	
		9	강서구 명지동 2566일원	509	
근생5	2,261	1	강서구 명지동 2592일원	457	
		2	강서구 명지동 2592일원	470	
		3	강서구 명지동 2592일원	469	
		4	강서구 명지동 2593일원	451	
		5	강서구 명지동 2593일원	414	
근생6	2,519	1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490	
		2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457	
		3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419	
		4	강서구 명지동 2594일원	382	
		5	강서구 명지동 2595일원	360	
		6	강서구 명지동 2597-1일원	411	
근생7	6,567	1	강서구 명지동 2585일원	748	
		2	강서구 명지동 2586-2일원	925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근생7	6,567	3	강서구 명지동 2596-2일원	927	
		4	강서구 명지동 2587-1일원	989	
		5	강서구 명지동 2587-1일원	1,000	
		6	강서구 명지동 2588일원	1,000	
		7	강서구 명지동 2589일원	978	
근생8	6,983	1	강서구 명지동 1632-1일원	969	
		2	강서구 명지동 1646-10일원	928	
		3	강서구 명지동 1631-1일원	991	
		4	강서구 명지동 1594-1일원	1,000	
		5	강서구 명지동 1593-7일원	1,000	
		6	강서구 명지동 1593-7일원	1,000	
		7	강서구 명지동 1593-7일원	1,095	
근생9	2,815	1	강서구 명지동 1196-5일원	477	
		2	강서구 명지동 1193일원	448	
		3	강서구 명지동 1192일원	503	
		4	강서구 명지동 1188일원	477	
		5	강서구 명지동 1186-11일원	440	
		6	강서구 명지동 1186-11일원	470	
근생10	1,903	1	강서구 명지동 1196-4일원	373	
		2	강서구 명지동 1196-5일원	490	
		3	강서구 명지동 1200-4일원	491	
		4	강서구 명지동 1201일원	549	
근생11	1,484	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506	
		2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506	
		3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472	
근생12	1,808	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421	
		2	강서구 명지동 1227-3일원	458	
		3	강서구 명지동 1227-3일원	483	
		4	강서구 명지동 1227-3일원	446	
근생13	2,032	1	강서구 명지동 1198-2일원	352	
		2	강서구 명지동 1198-2일원	420	
		3	강서구 명지동 1297-30일원	420	
		4	강서구 명지동 1237-31일원	420	
		5	강서구 명지동 1204-1일원	420	
근생14	1,833	1	강서구 명지동 1205-2일원	460	
		2	강서구 명지동 1205-3일원	460	
		3	강서구 명지동 1210일원	460	
		4	강서구 명지동 1213일원	453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근생15	1,092	1	강서구 명지동 1094-2일원	372	
		2	강서구 명지동 1094-1일원	357	
		3	강서구 명지동 1086-8일원	363	
근생16	1,122	1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378	
		2	강서구 명지동 1388-19일원	357	
		3	강서구 명지동 1388-19일원	387	
근생17	1,268	1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627	
		2	강서구 명지동 229일원	641	
근생18	1,577	1	강서구 명지동 299일원	580	
		2	강서구 명지동 299일원	560	
		3	강서구 명지동 299일원	43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후 2개 필지로 분할은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규모 이상이어야 함)

※필지합병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만 허용. 보행자도로가 사이에 있는 필지간의 합병은 불허)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 내용 준수

4) 복합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332,001
복합1	복합1	강서구 명지동 1981일원	35,923	특별계획구역
복합2	복합2	강서구 명지동 2003일원	57,487	특별계획구역
복합3	복합3	강서구 명지동 2156-6일원	62,546	특별계획구역
복합4	복합4	강서구 명지동 1862일원	78,302	특별계획구역
복합5	복합5	강서구 명지동 2288일원	97,743	특별계획구역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88,169	
상1	5,411	1	강서구 명지동 2030-1일원	2,764	
		2	강서구 명지동 2051일원	2,647	
상2	5,377	1	강서구 명지동 2033-1일원	572	
		2	강서구 명지동 2033-4일원	529	
		3	강서구 명지동 2033-4일원	529	
		4	강서구 명지동 2929일원	529	
		5	강서구 명지동 2933일원	529	
		6	강서구 명지동 2939일원	529	
		7	강서구 명지동 2926일원	529	
		8	강서구 명지동 2926일원	529	
		9	강서구 명지동 2033-3일원	529	
		10	강서구 명지동 2033-3일원	573	
상3	5,237	1	강서구 명지동 2033-2일원	574	
		2	강서구 명지동 2034일원	529	
		3	강서구 명지동 2921일원	529	
		4	강서구 명지동 2919-3일원	529	
		5	강서구 명지동 2919-2일원	529	
		6	강서구 명지동 2918일원	529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상3	5,237	7	강서구 명지동 2919-1일원	529	
		8	강서구 명지동 2919-1일원	528	
		9	강서구 명지동 2036일원	472	
		10	강서구 명지동 2041일원	489	
상4	5,482	1	강서구 명지동 2950-1일원	529	
		2	강서구 명지동 2950-1일원	529	
		3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4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5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645	
		6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605	
		7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8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9	강서구 명지동 2950일원	529	
		10	강서구 명지동 2949일원	529	
상5	5,197	1	강서구 명지동 2946일원	529	
		2	강서구 명지동 2952-1일원	529	
		3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4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5	강서구 명지동 2962일원	529	
		6	강서구 명지동 2962일원	465	
		7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00	
		8	강서구 명지동 2955-4일원	529	
		9	강서구 명지동 2955-2일원	529	
		10	강서구 명지동 2954일원	529	
상6	1,956	1	강서구 명지동 2961일원	628	
		2	강서구 명지동 2961일원	717	
		3	강서구 명지동 2961일원	611	
상7	5,710	1	강서구 명지동 2085-1일원	2,790	
		2	강서구 명지동 2084일원	2,920	
상8	14,803	1	강서구 명지동 2088일원	5,697	
		2	강서구 명지동 2906일원	9,106	
상9	4,821	1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3	
		2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3	
		3	강서구 명지동 2913일원	804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상9	4,821	4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4	
		5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4	
		6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3	
상10	1,889	1	강서구 명지동 2090-2일원	950	
		2	강서구 명지동 2090-4일원	939	
상11	4,252	1	강서구 명지동 2916일원	745	
		2	강서구 명지동 2915-2일원	881	
		3	강서구 명지동 2914일원	881	
		4	강서구 명지동 2914일원	881	
		5	강서구 명지동 2911일원	864	
상12	1,082	1	강서구 명지동 2907일원	1,082	
상13	4,268	1	강서구 명지동 2956-2일원	744	
		2	강서구 명지동 2959-3일원	886	
		3	강서구 명지동 2959-2일원	885	
		4	강서구 명지동 2909일원	885	
		5	강서구 명지동 2909일원	868	
상14	1,088	1	강서구 명지동 2897일원	1,088	
상15	7,231	1	강서구 명지동 2959-5일원	640	
		2	강서구 명지동 2959-5일원	768	
		3	강서구 명지동 2959-4일원	768	
		4	강서구 명지동 2959-4일원	768	
		5	강서구 명지동 2896일원	768	
		6	강서구 명지동 2895-1일원	718	
		7	강서구 명지동 2959-4일원	718	
		8	강서구 명지동 2959-4일원	767	
		9	강서구 명지동 2959-6일원	728	
		10	강서구 명지동 2959-6일원	588	
상16	3,006	1	강서구 명지동 2896일원	752	
		2	강서구 명지동 2897일원	752	
		3	강서구 명지동 2902-6일원	751	
		4	강서구 명지동 2902-6일원	751	
상17	7,763	1	강서구 명지동 2902-5일원	7,763	
상18	4,796	1	강서구 명지동 2961일원	1,550	
		2	강서구 명지동 2960일원	1,655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상18	4,796	3	강서구 명지동 2960일원	1,591	
상19	1,614	1	강서구 명지동 2894-1일원	1,614	
상20	2,730	1	강서구 명지동 2240일원	683	
		2	강서구 명지동 2240일원	682	
		3	강서구 명지동 2240일원	682	
		4	강서구 명지동 2240일원	683	
상21	2,703	1	강서구 명지동 2894-2일원	682	
		2	강서구 명지동 2894-2일원	669	
		3	강서구 명지동 2893-8일원	670	
		4	강서구 명지동 2893-8일원	682	
상22	1,695	1	강서구 명지동 2893-10일원	1,695	
상23	11,986	1	강서구 명지동 2883-4일원	4,807	
		2	강서구 명지동 2893-6일원	4,853	
		3	강서구 명지동 2965-1일원	2,326	
상24	5,533	1	강서구 명지동 2103-1일원	2,855	
		2	강서구 명지동 2104일원	2,678	
상25	5,457	1	강서구 명지동 2905-1일원	2,817	
		2	강서구 명지동 2875일원	2,640	
상26	3,292	1	강서구 명지동 2109-1일원	3,292	
상27	5,398	1	강서구 명지동 2873-3일원	2,640	
		2	강서구 명지동 2874-1일원	2,758	
상28	4,585	1	강서구 명지동 2239-3일원	2,268	
		2	강서구 명지동 2239-3일원	2,317	
상29	4,468	1	강서구 명지동 2850일원	2,232	
		2	강서구 명지동 2849일원	2,236	
상30	4,662	1	강서구 명지동 2848-3일원	2,277	
		2	강서구 명지동 2843일원	2,385	
상31	17,045	1	강서구 명지동 2793-1일원	17,045	
상32	7,412	1	강서구 명지동 1718일원	957	
		2	강서구 명지동 1718일원	1,043	
		3	강서구 명지동 1683일원	1,116	
		4	강서구 명지동 1683-2일원	1,120	
		5	강서구 명지동 1651-93일원	1,065	
		6	강서구 명지동 1675-1일원	1,036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상32	7,412	7	강서구 명지동 1674-2일원	1,075	
상33	5,727	1	강서구 명지동 1724-1일원	1,079	
		2	강서구 명지동 1723-1일원	1,110	
		3	강서구 명지동 1681-1일원	1,159	
		4	강서구 명지동 1680-7일원	1,200	
		5	강서구 명지동 1678-2일원	1,179	
상34	7,188	1	강서구 명지동 1668일원	1,091	
		2	강서구 명지동 1639-2일원	1,048	
		3	강서구 명지동 1637-1일원	1,036	
		4	강서구 명지동 1638-1일원	1,094	
		5	강서구 명지동 1640일원	1,052	
		6	강서구 명지동 1642일원	1,036	
		7	강서구 명지동 1642일원	831	
상35	7,305	1	강서구 명지동 1672-2일원	949	
		2	강서구 명지동 1672-4일원	1,036	
		3	강서구 명지동 1671-5일원	1,054	
		4	강서구 명지동 1670-3일원	1,091	
		5	강서구 명지동 1637-6일원	1,036	
		6	강서구 명지동 1636-2일원	1,049	
		7	강서구 명지동 1635-5일원	1,090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및 필지분할계획에 의한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내에서만 허용(단, 필지합병계획에 의한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

## 2 업무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213,214	
업1	45,572	1	강서구 명지동 2903-2일원	11,410	
		2	강서구 명지동 2878일원	11,678	
		3	강서구 명지동 2881일원	11,300	
		4	강서구 명지동 2883-1일원	11,184	
업2	41,938	1	강서구 명지동 2883-5일원	10,074	
		2	강서구 명지동 2883-9일원	10,560	
		3	강서구 명지동 2979일원	10,893	
		4	강서구 명지동 2980-2일원	10,411	
업3	4,435	1	강서구 명지동 2851-2일원	4,435	
업4	14,928	1	강서구 명지동 2855일원	9,626	
		2	강서구 명지동 2854일원	5,302	
업5	34,707	1	강서구 명지동 2862-3일원	4,951	
		2	강서구 명지동 2862-1일원	5,989	
		3	강서구 명지동 2860-1일원	6,564	
		4	강서구 명지동 2982-2일원	5,963	
		5	강서구 명지동 2861-3일원	5,836	
		6	강서구 명지동 2981일원	5,404	
업6	40,961	1	강서구 명지동 2814-2일원	10,465	
		2	강서구 명지동 2810일원	8,852	
		3	강서구 명지동 2805일원	5,783	
		4	강서구 명지동 2819-1일원	6,958	
		5	강서구 명지동 2821일원	8,903	
업7	30,673	1	강서구 명지동 1878일원	11,922	
		2	강서구 명지동 1790-22일원	10,025	
		3	강서구 명지동 1792-3일원	8,726	

※ 필지분할 불허

※ 가구내 필지합병 허용( 단, 필지합병계획을 작성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 가능)

※ 필지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 내용 준수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	31,111	
주1	주1	강서구 명지동	2012일원	1,023	
주2	주2	강서구 명지동	2024-2일원	1,658	
주3	주3	강서구 명지동	2039일원	2,493	
주4	주4	강서구 명지동	2962일원	3,233	
주5	주5	강서구 명지동	2113-2일원	2,284	
주6	주6	강서구 명지동	2842-1일원	4,662	
주7	주7	강서구 명지동	2517-3일원	339	
주8	주8	강서구 명지동	2514-1일원	390	
주9	주9	강서구 명지동	2562-1일원	747	
주10	주10	강서구 명지동	2598-4일원	422	
주11	주11	강서구 명지동	1677-2일원	1,794	
주12	주12	강서구 명지동	1668일원	1,794	
주13	주13	강서구 명지동	1595-4일원	1,142	
주14	주14	강서구 명지동	1623-3일원	1,215	
주15	주15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687	
주16	주16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687	
주17	주17	강서구 명지동	1321-1일원	951	
주18	주18	강서구 명지동	1297-21일원	795	
주19	주19	강서구 명지동	1086-4일원	538	
주20	주20	강서구 명지동	1021-3일원	1,680	
주21	주21	강서구 명지동	240-2일원	949	
주22	주22	강서구 명지동	280-2일원	835	
주23	주23	강서구 명지동	375-2일원	793	

2) 공공청사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20,927	
공1	공1	강서구 명지동 607-5일원	10,016	
공2	공2	강서구 명지동 977-12일원	7,332	
공3	공3	강서구 명지동 243-5일원	3,579	

3) 교육시설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28,890	
유1	유1	강서구 명지동 2517-1일원	339	
유2	유2	강서구 명지동 1278-12일원	1,218	
유3	유3	강서구 명지동 1086-11일원	858	
유4	유4	강서구 명지동 252일원	720	
초1	초1	강서구 명지동 1760-7일원	12,862	
초2	초2	강서구 명지동 2433-4일원	13,053	
초3	초3	강서구 명지동 1229-11일원	12,286	
초4	초4	강서구 명지동 1016-4일원	12,637	
중1	중1	강서구 명지동 2547일원	12,489	
중2	중2	강서구 명지동 1604일원	12,695	
중3	중3	강서구 명지동 1082-9일원	13,426	
고1	고1	강서구 명지동 2442-3일원	13,968	
고2	고2	강서구 명지동 1278-6일원	13,299	
고3	고3	강서구 명지동 238-5일원	9,040	

4) 열공급설비시설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36,308	
열1	열1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36,308	

5) 전기공급설비시설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3,909	
전1	전1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3,909	

6) 종교시설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5,354	
종1	종1	강서구 명지동 2517-4일원	998	
종2	종2	강서구 명지동 1278-11일원	1,295	
종3	종3	강서구 명지동 1321-5일원	1,491	
종4	종4	강서구 명지동 241-5일원	1,570	

7) 연구시설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98,850	
연1	연1	강서구 명지동 2829-2일원	54,897	
연2	연2	강서구 명지동 2776-8일원	43,953	

8) 보육시설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106	
보1	보1	강서구 명지동 2517-3일원	364	
보2	보2	강서구 명지동 1325-3일원	742	

9) 편익시설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합 계	-	-	21,053	
편1	편1	강서구 명지동 1795일원	5,876	
편2	편2	강서구 명지동 2423일원	675	
편3	편3	강서구 명지동 2509-1일원	1,950	
편4	편4	강서구 명지동 1623-4일원	3,297	
편5	편5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1,191	
편6	편6	강서구 명지동 618-50일원	4,716	
편7	편7	강서구 명지동 241-8일원	3,348	

10) 주유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합 계	-	-	9,061	
주유1	주유1	강서구 명지동 978일원	1,626	
주유2	주유2	강서구 명지동 2827-5일원	2,052	
주유3	주유3	강서구 명지동 2562일원	1,653	
주유4	주유4	강서구 명지동 1635-6일원	1,674	
주유5	주유5	강서구 명지동 1219일원	1,096	
주유6	주유6	강서구 명지동 257-1일원	960	

11) 의료시설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합 계	-	-	118,440	
의1	의1	강서구 명지동 2003일원	5,4037	특별계획구역
의2	의2	강서구 명지동 2160일원	64,403	특별계획구역



12) 배수장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308	
배1	배1	강서구 명지동 1008-11일원	1,308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S=1/5,000)

- 별첨1-라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주택건설용지

##### 1) 일반단독주택용지

##### ■ 필지형 단독주택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1	D1~D6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필지당 3가구에 이하에 한함)</li> <li>•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li> <li>•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1층과 지하층에 한한다.</li> <li>-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li> </ul> </li> <li>•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li> <li>• 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li> <li>•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옥상녹화시 허용</li> <li>-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li> <li>-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도로에 면한 변 : 1.0m 건축한계선 지정</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2	H1~H8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타운하우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운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이상의 독립된 주택이 기타 부대시설을 공유하고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연속저층단독주택을 말한다.</li> <li>- 타운하우스는 3층 이하로서 각 가구를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한다.</li> </ul> </li> <li>•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li> <li>• 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li> <li>•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옥상녹화시 허용</li> <li>-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li> <li>-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2.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2) 공동주택

### ■ 연립주택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E1~E3	용도	허용	•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 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li> <li>•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운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이상의 독립된 주택이 기타 부대시설을 공유하고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연속저층단독주택을 말한다.</li> <li>- 타운하우스는 3층 이하로서 각 가구를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한다.</li> </ul> </li> <li>• 주거동의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의 길이’ 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li> <li>- 4호이하로 한다.</li> <li>-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ㄹ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li> </ul> </li> <li>•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 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li> <li>• 담장,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타운하우스의 경우 담장 높이는 1.0m)</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li> </ul> </li> <li>•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지붕은 조형적 디자인으로 한다</li> <li>-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5.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아파트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A3 B1~B4 C1~C8	용도	허용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 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li> <li>•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의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의 길이’ 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li> <li>- 4호이하로 한다.</li> <li>-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ㄹ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li> </ul> </li> <li>•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 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li> <li>• 담장,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li> <li>-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li> </ul> </li> <li>•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지붕은 조형적 디자인으로 한다</li> <li>-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li> </ul> </li> <li>•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필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A1	60㎡이하	82,380	2,080	20층이하	25%이하	200%이하	
A2	60㎡이하	37,912	860	20층이하	25%이하	180%이하	외국인 임대주택 포함
A3	60㎡이하	41,849	1,050	20층이하	25%이하	200%이하	
B1	60~85㎡이하	59,036	1,250	25층이하	25%이하	220%이하	
B2	60~85㎡이하	51,078	980	20층이하	30%이하	200%이하	임대주택
B3	60~85㎡이하	38,961	750	20층이하	30%이하	200%이하	
B4	60~85㎡이하	37,012	710	20층이하	30%이하	200%이하	
C1	85㎡초과	39,222	600	30층이하	25%이하	220%이하	
C2	85㎡초과	38,069	580	25층이하	25%이하	220%이하	
C3	85㎡초과	33,992	470	25층이하	25%이하	200%이하	
C4	85㎡초과	40,390	620	30층이하	25%이하	220%이하	
C5	85㎡초과	33,005	500	30층이하	25%이하	220%이하	
C6	85㎡초과	30,155	460	30층이하	25%이하	220%이하	
C7	85㎡초과	60,579	930	20층이하	30%이하	220%이하	
C8	85㎡초과	48,122	670	15층이하	30%이하	200%이하	
E1	60~85㎡이하	31,331	300	4층이하	50%이하	120%이하	연립주택
E2	60~85㎡이하	13,094	130	4층이하	50%이하	120%이하	연립주택
E3	60~85㎡이하	18,553	180	4층이하	50%이하	120%이하	연립주택
복합1	85㎡초과	35,923	1,010	30층이하	6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
복합2	85㎡초과	57,487	1,620	30층이하	6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
복합4	85㎡초과	78,302	2,210	30층이하	6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복합1,2,4의 경우 주거가 포함된 복합건물 건축시 적용

###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R	근생1 ~ 근생18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li> <li>※근린생활시설의 부대시설로 주거 1가구 허용(단, 근생7,8은 제외)</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li> </ul>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외부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li> <li>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li> </ul> </li> <li>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담장, 대문,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린생활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li> </ul> </li> <li>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나. 상업·업무용지

1)상업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상1,7,8,17 상23 ~ 30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li> </ul> </li> <li>• 옥상구조물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상2 ~ 6 상9 ~ 16 상18 ~ 22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li> </ul> </li> <li>• 옥상구조물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2	상32 ~ 상35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li> </ul> </li> <li>• 옥상구조물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3	상31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8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li> </ul> </li> <li>• 옥상구조물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li>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한다.</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7 ~ 1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2)업무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	업1 ~ 업7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업1~2	800% 이하
				업3~6	600% 이하
				업7	500% 이하
			높이	업1~2	30층 이하
				업3~6	20층 이하
				업7	2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li> <li>-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li> </ul> </li> <li>• 옥상구조물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별표2>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상업·업무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중심상업	노선상업	기타상업	
도면표시	S1	S2	S3	U
해당가구	상1 ~ 상30	상32 ~ 상35	상31	업1 ~ 업7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6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한함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6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	○	○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제외	○ 상점에 한함	○ 대형할인점에 한함	○
운수시설	○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	○	○
교육연구 시설	○ 학원 및 연구소에 한함	○ 학원 및 연구소에 한함	×	○
노유자시설	○	○	○	○
운동시설 (운동장 제외)	○	○	○	○
업무시설	○	○	○	○
숙박시설	○	×	×	○
위락시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제외)	○	○	×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기타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허용용도, × : 불허용도

※ 단, 숙박 및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100m, 위락시설은 50m 이격한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1	주3 ~ 6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li> </ul> </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2	주11, 1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li> <li>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ul> </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3	주1, 2, 주15 ~ 20, 주22, 2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li> <li>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ul> </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3	주7 ~ 10, 주13, 14, 2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li> <li>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ul> </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2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2) 공공청사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	공1 ~ 공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li> <li>•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li> <li>• 부속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3) 학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1 E2 E3 E4	유1~유4 초1~초4 중1~중3 고1~고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1 :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li> <li>• E2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li> <li>• E3 :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li> <li>• E4 :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단, 국제학교 및 BTL·BTO 사업시 250%이하)	
			높이	유1~4	4층 이하
				초1~4 중1~3 고1~3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 4) 열공급설비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1	열1	용도	허용	• 발전시설 중 열공급설비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5) 전기공급설비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2	전1	용도	허용	• 발전시설 중 전기공급설비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6) 종교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W	종1~종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용도(목회자숙소 등)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li> </ul> </li> <li>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7) 연구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6	연1 연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li> <li>부수용도로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6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li> </ul> </li> <li>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8) 보육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5	보1 보2	용도	허용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9) 편익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편1 ~ 편7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경마장 제외)</li> <li>•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li> </ul> </li>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10) 주유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3	주유1 ~ 주유6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속용도</li> <li>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li> <li>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 11) 배수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4	배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수장</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교통처리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 근린생활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li> <li>-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li> <li>•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당 2대이상’ 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li> </ul>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li> </ul> </li> <li>•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li> <li>-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li>-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li> </ul> </li> <li>• 보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li> <li>-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중 10%이하 범위내에서 지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 으로 한다.</li> </ul> </li> <li>•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전거보관소 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li> <li>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li> </o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관가능대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동세대당 0.3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 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복지관 및 관리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대</td> </tr> </tbody> </table> </li> </ul> </li> <li>-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li> </ul>	구 분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구 분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구 분	계획 내용
상업용지 업무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li> </ul> </li> <li>•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li> <li>-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li>- 대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li> </ul> </li> <li>• 보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업무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li> </ul> </li> </ul>
기타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li> <li>-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li> </ul> </li> <li>• 주차장 관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li> <li>-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li> <li>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li> </ol> </li> <li>-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li> <li>-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li> </ul> </li> </ul>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근린생활용지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lt;별표3&gt;을 따른다.</li> </ul>
공동주택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lt;별표3&gt;을 따른다.</li> </ul> </li> <li>•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lt;별표3&gt;을 따른다.</li> </ul> </li> <li>•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li> <li>-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ul>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 30% 이상</li> <li>2.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 공동주택 : 40% 이상</li> <li>3.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50% 이상</li> <li>4. 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li> </ol> </li> </ul> </li> <li>• 단지내 도로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 단지내 보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li>-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li> </ul> </li> </ul>

구 분	계획 내용
상업용지 업무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li> <li>-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li> </ul> </li> <li>•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lt;별표3&gt;을 따른다.</li> <li>- 각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li> </ul> </li> <li>•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lt;별표3&gt;을 따른다.</li> </ul> </li> <li>•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lt;별표3&gt;을 따른다.</li> <li>-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ul>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li> <li>2. 연면적 1,000㎡ ~ 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li> <li>3.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li> </ol> </li> <li>-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li> </ul> </li> <li>• 대지내 도로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 대지내 보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li>- ‘투수성 포장’ 을 적극 권장한다.</li> </ul> </li> </ul>
기타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lt;별표3&gt;을 따른다.</li> </ul>

다. 기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생태 면적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면적률(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에 의거 시설별 생태면적률 확보</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생태면적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동주택지</td> <td>연립</td> <td>35 이상</td> </tr> <tr> <td>아파트</td> <td>40 이상</td> </tr> <tr> <td colspan="2">단독주택지(블록형포함)</td> <td>40 이상</td> </tr> <tr> <td colspan="2">상업·업무시설</td> <td>30 이상</td> </tr> <tr> <td colspan="2">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td> <td>50 이상</td> </tr> <tr> <td colspan="2">공공건물</td> <td>40 이상</td> </tr> <tr> <td colspan="2">기타시설</td> <td>20 이상</td> </tr> </tbody> </table> <p>※ 생태면적률 = <math>\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um(\text{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math></p>	구 분		생태면적률(%)	공동주택지	연립	35 이상	아파트	40 이상	단독주택지(블록형포함)		40 이상	상업·업무시설		30 이상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		50 이상	공공건물		40 이상	기타시설		20 이상
	구 분		생태면적률(%)																						
공동주택지	연립	35 이상																							
	아파트	40 이상																							
단독주택지(블록형포함)		40 이상																							
상업·업무시설		30 이상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		50 이상																							
공공건물		40 이상																							
기타시설		20 이상																							
	유비쿼 터스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U-City 사업’ 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li> </ul>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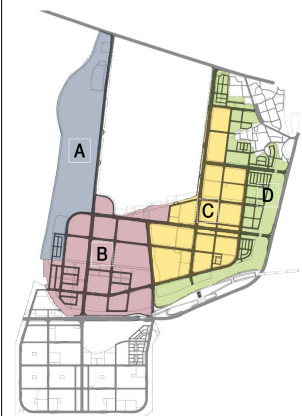
구분	계획 내용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함.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 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li> <li>- ‘차도 연결형 전면공지’ 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li> </ul> </li> <li>•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li>- 경계부 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함</li> <li>2.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li> </ol> </li> <li>- 포장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와 경관상세계획에서 별도의 포장계획을 제시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li> </ul> </li> </ul>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각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li>•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부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함</li> <li>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li> </ol> </li> <li>- 시설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li> <li>2.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li> <li>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li> <li>4. 공개공지 면적 50㎡ 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 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함</li> <li>5.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함</li> </ol> </li> </ul> </li> </ul>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함. 이 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하도록 함</li> <li>• ‘공공조경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li> <li>-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li> <li>- 식재는 교목은 1㎡당 0.3본, 관목은 1㎡당 0.5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함.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함</li> </ul> </li> </ul>
공공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됨</li> <li>-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함.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li> </ul> </li> <li>•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함.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상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li> <li>•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ul>

##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 ■ 권역구분

구분	계획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권역</th> <th>블럭명</th> <th>주요시설기능</th> <th>권역이미지</th> </tr> </thead> <tbody> <tr> <td>A</td> <td>경1, 연결1, 완1~2, 근1, 광1, 전1, 열1, 주1, 공1, D-1, H-1, 배1</td> <td>친환경 생태공원, 환경처리시설, 블록형 단독주택</td> <td>Eco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어울림</td> </tr> <tr> <td>B</td> <td>경1, 연결1,2,4, 완3, 어1, 광2, 복합1~5, 의료1~2, 업1~7, 상1~30, 주2~6, 주유1~2</td> <td>워터프론트, 복합시설, 중심상업 및 업무시설</td> <td>Vitality 미래국제도시의 활력</td> </tr> <tr> <td>C</td> <td>경2, 연결2,3, 완4~7, 어2~4, A1~3, B1~B4, C1~C8, 초1,2, 중1, 고1, 유1, 보1, 편1~3, 중1, 주7,8, 주유4, 근생1,2, 상32~35</td> <td>중고층 주거지, 커뮤니티광장, 생태공원</td> <td>Amenity 도심 생활속 쾌적함</td> </tr> <tr> <td>D</td> <td>경2, 연결3,4, 완4~8, 어5~7, D2~6, H2~8, E1~3, 초3,4, 중2,3, 고2,3, 연2, 광3, 상31, 근생3~18, 유2~4, 중2~4, 편4~7, 보2, 공3, 주유3,5,6, 주9,10, 주13~주22</td> <td>블록형 단독주거지, 커뮤니티 지원시설, 연결녹지, 수로</td> <td>Community 안락한 커뮤니티의 편안함</td> </tr> </tbody> </table> </div>	권역	블럭명	주요시설기능	권역이미지	A	경1, 연결1, 완1~2, 근1, 광1, 전1, 열1, 주1, 공1, D-1, H-1, 배1	친환경 생태공원, 환경처리시설, 블록형 단독주택	Eco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어울림	B	경1, 연결1,2,4, 완3, 어1, 광2, 복합1~5, 의료1~2, 업1~7, 상1~30, 주2~6, 주유1~2	워터프론트, 복합시설, 중심상업 및 업무시설	Vitality 미래국제도시의 활력	C	경2, 연결2,3, 완4~7, 어2~4, A1~3, B1~B4, C1~C8, 초1,2, 중1, 고1, 유1, 보1, 편1~3, 중1, 주7,8, 주유4, 근생1,2, 상32~35	중고층 주거지, 커뮤니티광장, 생태공원	Amenity 도심 생활속 쾌적함	D	경2, 연결3,4, 완4~8, 어5~7, D2~6, H2~8, E1~3, 초3,4, 중2,3, 고2,3, 연2, 광3, 상31, 근생3~18, 유2~4, 중2~4, 편4~7, 보2, 공3, 주유3,5,6, 주9,10, 주13~주22	블록형 단독주거지, 커뮤니티 지원시설, 연결녹지, 수로	Community 안락한 커뮤니티의 편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별 해당 블록</li> </ul> </li> </ul>
	권역	블럭명	주요시설기능	권역이미지																	
	A	경1, 연결1, 완1~2, 근1, 광1, 전1, 열1, 주1, 공1, D-1, H-1, 배1	친환경 생태공원, 환경처리시설, 블록형 단독주택	Eco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어울림																	
	B	경1, 연결1,2,4, 완3, 어1, 광2, 복합1~5, 의료1~2, 업1~7, 상1~30, 주2~6, 주유1~2	워터프론트, 복합시설, 중심상업 및 업무시설	Vitality 미래국제도시의 활력																	
	C	경2, 연결2,3, 완4~7, 어2~4, A1~3, B1~B4, C1~C8, 초1,2, 중1, 고1, 유1, 보1, 편1~3, 중1, 주7,8, 주유4, 근생1,2, 상32~35	중고층 주거지, 커뮤니티광장, 생태공원	Amenity 도심 생활속 쾌적함																	
D	경2, 연결3,4, 완4~8, 어5~7, D2~6, H2~8, E1~3, 초3,4, 중2,3, 고2,3, 연2, 광3, 상31, 근생3~18, 유2~4, 중2~4, 편4~7, 보2, 공3, 주유3,5,6, 주9,10, 주13~주22	블록형 단독주거지, 커뮤니티 지원시설, 연결녹지, 수로	Community 안락한 커뮤니티의 편안함																		

#### 권역구분

##### • 색채계획 적용 방안

- 색채계획의 적용은 공동주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색채계획에서 제시된 색상을 기준으로 배색이미지 사례를 가급적 적용하도록 한다.
- 색채계획 적용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용 색채적용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권역별 도시이미지

권역	해당블럭	구분	계획내용
A	경1, 연결1, 완1~2, 근1, 광1, 전1, 열1, 주1, 공1, D-1, H-1, 배1	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낙동강하구의 매립지를 중심으로 풍부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부산시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li> <li>• 매립지 내 건축물 등 대형구조물의 계획을 지양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함을 감안하여 자연환경 복원개념의 공원을 계획한다. 또한 공원부지 및 유보지의 유수와 자생식물의 식생을 활용하여 양호한 조류생육환경을 조성한다.</li> <li>•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연환경 복원지역과 시가화 지역이 접하는 중간지점은 집단시설에 의한 생태적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활동성 이용시설의 입지를 자제하고, 대중적이면서 제한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li> <li>• 열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도시환경시설을 도심과 이격배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호한다. 환경시설은 주요가로변 완충녹지 확보를 통해 시각적 차폐를 유도한다.</li> <li>• 저층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수경관 및 주변 공원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조색과 지붕색은 저채도를 적용하여 차분하고 편안한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li> <li>• 국도 24호에서 진입하는 가로축은 유보지의 미래개발에 대비하여 충분한 녹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도시진입가로경관을 조성한다.</li> </ul>

권역	해당블럭	구분	계획내용
----	------	----	------

A

경1, 연결1,  
완1~2, 근1,  
광1, 전1,  
열1, 주1,  
공1, D-1,  
H-1, 배1

색채  
계획

- A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R, 7.5Y, 2.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7.5R, 7.5Y, 2.5YR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7.5R, 7.5Y, 2.5YR  
- 명도/채도 (V/C) : 6.0 ~ 7.0 / 3.0 ~ 4.0

구분			A권역 색채계획		
색상			가	나	다
색채 이미지	주조색	1			
		2			
	보조색	3			
		4			

A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A권역 배색예시		
색상		가	나	다
배색 이미지	주조색			
	보조색			

공동주택 배색예시



권역	해당블럭	구분	계획내용
----	------	----	------

B

경1, 연결1,2,4, 완3, 어1, 광2, 복합1~5, 의료1~2, 업1~7, 상1~30, 주2~6, 주유1~2

계획방향



- 근거리 내 해상경관과 원경의 산을 향한 조망이 가능한 지역현황 특성에 따라 주변경관을 향한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필요하다. 명지지구 자체의 다양한 경관요소 -수변, 도로, 공원·녹지, 수로 등-에 대한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통해 신도시의 CBD가 지닐 수 있는 인공적이며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을 극복하도록 한다.
- 명지지구의 CBD는 국제업무의 교류기능과 중심상업기능, 주상복합기능, 종합의료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지닌 건축물 경관의 수직적/수평적인 제어를 통해 조화롭게 계획된 신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한다.
- 주변의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차폐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는 권역으로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회랑 등) 건축한계선을 통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남측 명지지구와의 경계부 연결녹지 내 자연친화적인 도심환경을 위한 친수, 친자연적 요소를 적극 활용도모한다.
- 도심부 가로활동을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전용가로의 이벤트성을 부여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디자인성 높은 가로시설을 계획한다.
- 보행자 중심의 친근한 공간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저층부(지상으로부터 10m 이하) 부분의 지상부 필로티, 차양, 간판, 가로시설 등의 디자인 가이드를 통한 가로환경의 통일성과 미관성을 증진한다.

권역	해당블럭	구분	계 획 내 용
----	------	----	---------

B

경1,  
연결1,2,4,  
완3, 어1,  
광2  
복합1~5,  
의료1~2,  
업1~7,  
상1~30,  
주2~6,  
주유1~2

색채  
계획

- B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 명도/채도 (V/C) : 6.0 ~ 7.0 / 3.0 ~ 4.0

구분			B권역 색채계획		
색상			가	나	다
색 채 이 미 지	주조색	1			
	보조색	2			
		3			
	강조색	4			

B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B권역 배색예시		
색상		가	나	다
배 색 이 미 지				

공동주택 배색예시

권역	해당블럭	구분	계획내용
----	------	----	------

C

경2,  
연결2,3,  
완4~7,  
어2~4,  
A1~3,  
B1~B4,  
C1~C8,  
초1,2, 중1,  
고1, 유1,  
보1, 편1~3,  
중1, 주7,8,  
주유4,  
근생1,2,  
상32~35

계획  
방향



- 고층형 공동주택단지가 남북으로 형성되는 지역으로 커뮤니티 회랑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간이미지를 형성한다.
- 내부간선도로와 커뮤니티회랑의 사이에 공동주택단지가 길게 선형의 입면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어 배경의 송학산, 봉화산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단지를 설계할 때 단지 내에서 을숙도 방향 낙동강하구 수변경관과 커뮤니티회랑으로의 개방적인 조망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격자형 도시골격이 돋보이는 형태를 취하며 동서방향의 개방형 시각회랑을 확보한다.
- 도시기능을 형성하는 B권역과의 경계부에 선형의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남북의 바람길을 형성한다.
- 커뮤니티별 공원/광장 등의 조성을 통해 휴식과 녹음을 제공하고 보행동선과 녹지체계를 오픈스페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권역	해당블럭	구분	계획내용
----	------	----	------

C

경2,  
연결2,3,  
완4~7,  
어2~4,  
A1~3,  
B1~B4,  
C1~C8,  
초1,2, 중1,  
고1, 유1,  
보1, 편1~3,  
종1, 주7,8,  
주유4,  
근생1,2,  
상32~35

색채  
계획

- C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V/C) : 6.0 ~ 7.0 / 3.0 ~ 4.0


구분			C권역 색채계획		
색상			가	나	다
색채 이미지	주조색	1			
	보조색	2			
		3			
	강조색	4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C권역 배색예시		
색상		가	나	다
배색 이미지				

공동주택 배색예시

권역	해당블럭	구분	계획내용
D	경2, 연결3,4, 완4~8, 어5~7, D2~6, H2~8, E1~3, 초3,4, 중2,3, 고2,3, 연2, 광3, 상31, 근생3~18, 유2~4, 중2~4, 편4~7, 보2, 공3, 주유3,5,6, 주9,10, 주13~주22	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 하구와 면하는 지역으로 생태녹지와 연결하는 안락한 저층의 주거지역을 계획한다.</li> <li>• 지구 동측과 남북을 에워싼 연결녹지 내 수로경관을 형성하여 하천 주변 공간을 근린 생활 시설물(커뮤니티회랑)과 연계한 친수형 커뮤니티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커뮤니티회랑을 중심으로 명지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권역으로서 보다 친근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적인 이미지보다는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공공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자연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색채이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른 권역에 비해 체계화된 색채계획 수립 용이)</li> <li>• 수변경관을 따라서 자연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간접조명을 중심으로 한 차분하고 안정된 야간경관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권역으로 진입하는 외곽순환도로에 의해 분리되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속성을 갖는 보행 네트워크 형성. 보행 네트워크와 그린네트워크를 일치시켜 보행자들이 편안하면서도 자연의 이미지가 풍부한 보행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li> </ul>

권역	해당블럭	구분	계획내용																																																											
D	경2, 연결3,4, 완4~8, 어5~7, D2~6, H2~8, E1~3, 초3,4, 중2,3, 고2,3, 연2, 광3, 상31, 근생3~18, 유2~4, 중2~4, 편4~7, 보2, 공3, 주유3,5,6, 주9,10, 주13~주22	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 내 보행자 전용가로의 경우 인공소재(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소재(점토포장, 잔디포장, 데크)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단, 유지·관리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자연친화적 소재(나무, 벽돌, 흙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li> <li>• 저층의 건축물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D권역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조색과 지붕색은 저채도를 적용하여 돌출감, 압박감이 덜 느껴질 수 있는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li> </ul>																																																											
		색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색 : - 색상 (H) : 10B, 5G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li> <li>- 보조색 : - 색상 (H) : 10B, 5G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li> <li>- 강조색 : - 색상 (H) : 10B, 5G - 명도/채도(V/C) : 6.0 ~ 7.0 / 3.0 ~ 4.0</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 colspan="3">D권역 색채예시</th> </tr> <tr> <th colspan="2">색상</th> <th>가</th> <th>나</th> <th>다</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색 채 이 미 지</td> <td>주조색</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보조색</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td> <td></td> <td></td> </tr> <tr> <td>강조색</td> <td>4</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D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 colspan="3">D권역 배색예시</th> </tr> <tr> <th colspan="2">색상</th> <th>가</th> <th>나</th> <th>다</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배 색 이 미 지</td> <td colspan="2"></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배색예시</p>	구분		D권역 색채예시			색상		가	나	다	색 채 이 미 지	주조색	1				보조색	2				3				강조색	4				구분		D권역 배색예시			색상		가	나	다	배 색 이 미 지																		
구분		D권역 색채예시																																																												
색상		가	나	다																																																										
색 채 이 미 지	주조색	1																																																												
	보조색	2																																																												
		3																																																												
	강조색	4																																																												
구분		D권역 배색예시																																																												
색상		가	나	다																																																										
배 색 이 미 지																																																														

##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본 계획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이하 “도조례 ” 라 한다),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에 따른다.

구 분	계 획 내 용
<p>옥외 광고물</p> <p>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시설 및 표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li> <li>2) 지상 변압기함</li> <li>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li> <li>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li> <li>5) 교통안전시설물</li> <li>6) 낙석방지시설물</li> <li>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li> <li>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li> <li>9) 그밖에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li> </ol> </li> <li>- 특정 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li> <li>2.)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li> <li>3) 표시위치 또는 장소</li> <li>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li> </ol> </li> </ul> </li> <li>• 광고물등의 설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 이하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li> <li>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li> <li>3) 건물의 4층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li> <li>4)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li> </ol> </li> </ul> </li> <li>• 광고물등의 재질 및 색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0이하로, 흑색·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원색계열의 정의는 한국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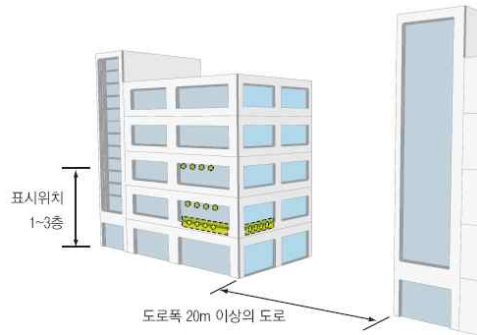
구 분	계획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옥외 광고물</p> <p style="text-align: center;">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등의 형태 및 규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li> <li>-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li> <li>- 광고물 등은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li> <li>-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li> </ul> </li> <li>• 광고물등의 문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li> <li>-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li> <li>-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가 되도록 한다.</li> <li>-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i> <li>-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 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li> </ul> </li> <li>• 광고물등의 조명연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 “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ol> </li> <li>- 조명을 연출할 경우 휘도(광원의 밝기)는 낮게 유지하여 보는 사람들의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을 유도한다.</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3층이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li> <li>-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li> <li>-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li> <li>-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li> </ul> </li> </ul>



구 분	계 획 내 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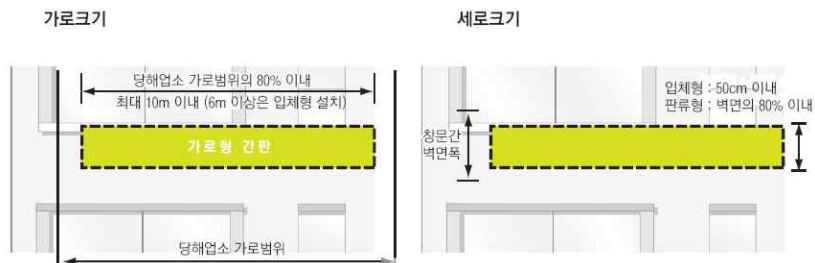
옥외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가로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형식**



- 가로형 옥외광고물의 표시방식은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 1) 가로형 옥외광고물은 도형이나 그림보다는 문자가 잘 인지되도록 구성하고 · 간판의 여백이 단순한 바탕이 아니라 그림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지되도록 디자인한다.
- 2) 가로형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1업소 당 1면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가능하다.
- 3)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가로폭의 80% 이내로 최대 10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단, 6m가 넘을 경우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 4) 광고물의 세로크기는 입체형의 경우 50cm이내, 판류형의 경우 벽면의 80% 이내로 표시한다.
- 5) 광고물의 두께는 건축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제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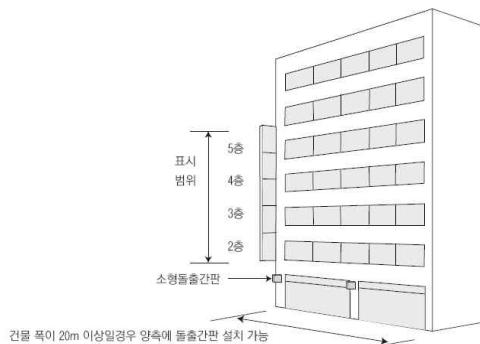
**가로형 옥외광고물의 표기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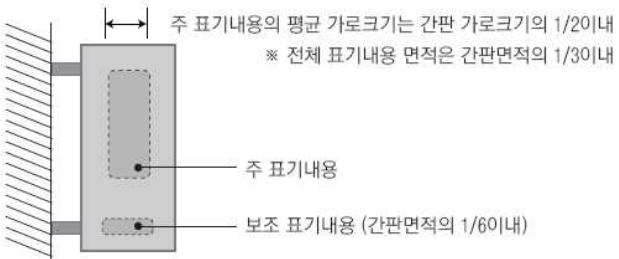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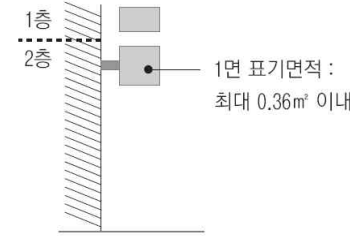


• **돌출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축물의 5층이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부분에는 표시 불가능하다. 단,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에까지 표시한다.
- 1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20m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가 가능하며 소형 돌출간판은 안전을 위해 인도에만 표시하되 업소 출입구 좌,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한다.

**돌출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형식**



구 분	계 획 내 용
옥외 광고물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li> <li>- 표기내용의 전체 면적은 간판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고 주 표기내용의 크기는 평균 가로크기를 간판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표기한다.</li> <li>- 간판의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기하고 보조 표기내용의 경우 간판면적의 1/6 이내로 표기한다. 영업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취급품목 1종만 표기가능하고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은 표기 불가능하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돌출형 옥외광고물의 표기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 돌출간판의 표기면적은 1면 최대 0.36㎡ 이내로 제한하며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cm이내로 표시하며 2개 이상의 설치시 돌출 폭을 일치시킨다. 세로크기는 건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표시하며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 이격하여 두께 30cm 이내로 표시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소형돌출형 옥외광고물의 표기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이용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li> <li>-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업소의 정보 표기는 지양하여 업소의 이미지와 관련된 중요 핵심 요소만을 간결하게 표현한다.</li> <li>- 건물에 전면 공지에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수직적인 형상 유도하고, 입점 업소의 위치를 알리는 문안은 통일성을 가지도록 디자인한다.</li> <li>- 서체는 크기, 간격 등을 단일 건물 광고물 및 건물 단위로 조화를 유도한다.</li> <li>- 광고물은 당해 건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표시하고 지주이용 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li> <li>- 지주이용 옥외광고물은 1면 최대 3㎡ 이내로 표시하고, 세로크기는 최대 5m 이내로 표시한다.</li> </ul> </li> </ul>

구 분	계 획 내 용
옥외광고물 등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광고물 관련 조례를 따르되, 신도시에서는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li> <li>• 업소당 가로형 간판1개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업소와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가능하다.</li> <li>•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은 각각 세부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li> <li>•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를 금지한다.</li> <li>• 현수막, 벽보 등 게시 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 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갯수를 정하여 설치한다.</li> <li>• 시장·군수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li> </ul>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절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li> <li>•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li> <li>•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li> </ul>
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li> </ul>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야간 경관	<p>가로조명에 관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li> <li>-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li> <li>- 가로변 일반구간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주간과 거의 같은 수준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맞게 유도·조정한다.</li> <li>- 도로변의 가로등주는 테이퍼폴이나 주철폴을 사용하고 중심지역, 공원, 보행자 공간에는 주철폴을 사용한다.</li> </ul> </li> <li>• 가로의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li> <li>- 5개 간선가로경관축의 광원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경제적이며, 안개에 대한 투시성이 좋아 가로조명에 적합한 고압나트륨램프를 기본으로 하되, 상업용지, 공원 등과 접한 구간은 중앙분리대 또는 보도측에 메탈헬라이드램프 등 2가지 광원을 혼합하여 독특한 야간경관을 창출한다.</li> <li>-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20룩스 이상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한다.</li> <li>-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중앙가로등과 가로변 가로등을 병렬로 마주보기식으로 설치한다.</li> <li>- 구역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보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p> <table border="1" data-bbox="429 1563 1422 1868"> <thead> <tr> <th>구 분</th> <th>주 간 선 도 로</th> <th>집분산도로</th> </tr> </thead> <tbody> <tr> <td>조 도</td> <td>30룩스 이상</td> <td>20룩스 이상</td> </tr> <tr> <td>높 이</td> <td>10 - 20m</td> <td>5 - 10m</td> </tr> <tr> <td>간 격</td> <td>30 - 40m</td> <td>40 - 50m</td> </tr> <tr> <td>등 종</td> <td>높은 조도의 등 (예 : 고압 나트륨 등)</td> <td>자연색조의 등 (예 : 메탈 등)</td> </tr> <tr> <td>배치방식</td> <td>마주보기식</td> <td>어긋나기식</td> </tr> </tbody> </table>	구 분	주 간 선 도 로	집분산도로	조 도	30룩스 이상	20룩스 이상	높 이	10 - 20m	5 - 10m	간 격	30 - 40m	40 - 50m	등 종	높은 조도의 등 (예 : 고압 나트륨 등)	자연색조의 등 (예 : 메탈 등)	배치방식	마주보기식	어긋나기식
구 분	주 간 선 도 로	집분산도로																	
조 도	30룩스 이상	20룩스 이상																	
높 이	10 - 20m	5 - 10m																	
간 격	30 - 40m	40 - 50m																	
등 종	높은 조도의 등 (예 : 고압 나트륨 등)	자연색조의 등 (예 : 메탈 등)																	
배치방식	마주보기식	어긋나기식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p data-bbox="256 1104 384 1171">가로조명에 관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조명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상업지역 주변은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li> <li>-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li> <li>- 상업지역내 간선도로와 면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li> </ul> </li> <li>•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li> <li>-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p> <table border="1" data-bbox="411 987 1417 1328"> <thead> <tr> <th data-bbox="411 987 743 1025">구 분</th> <th data-bbox="743 987 1417 1025">대 상 용 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1 1025 743 1104">상업업무용지</td> <td data-bbox="743 1025 1417 1104">· 상업업무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td> </tr> <tr> <td data-bbox="411 1104 743 1223">아파트용지</td> <td data-bbox="743 1104 1417 1223">· 단지의 입지상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위상의 표현이 필요한 지역</td> </tr> <tr> <td data-bbox="411 1223 743 1328">복합용지</td> <td data-bbox="743 1223 1417 1328">· 복합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td> </tr> </tbody> </table>	구 분	대 상 용 지	상업업무용지	· 상업업무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아파트용지	· 단지의 입지상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위상의 표현이 필요한 지역	복합용지	· 복합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구 분	대 상 용 지							
상업업무용지	· 상업업무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아파트용지	· 단지의 입지상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위상의 표현이 필요한 지역								
복합용지	· 복합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구역번호	토지이용	면적(㎡)	위 치
특1	의료관련 복합시설	54,037	의1
특2	의료관련 복합시설	64,403	의2
특3	주거, 상업복합시설	35,923	복합1
특4	주거, 상업복합시설	57,487	복합2
특5	컨벤션, 호텔	62,546	복합3
특6	주거, 상업복합시설	78,302	복합4
특7	컨벤션, 호텔	97,743	복합5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1 특2 특3 특4 특5 특6 특7	의1, 의2 복합1~5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영 제45조에서 규정 한 지구단위계획 내용</li> <li>•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업계획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li> </ul> </li> <li>나.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li> <li>-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 구상(구조 및 용도)</li> <li>-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li> <li>-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li> </ul> </li> <li>다.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li> </ul> </li> </ul> </li> </ul>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1 특2	의1 의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9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li> <li>•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li> <li>•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종교시설</li> <li>• 판매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li> <li>• 위락시설</li> <li>• 의료시설</li> <li>• 창고시설</li> <li>• 방송통신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li> <li>• 노유자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운동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li> <li>• 관광휴게시설</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의료시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2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3 특4 특6	복합1 복합2 복합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8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li> <li>•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li> <li>•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종교시설</li> <li>• 판매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li> <li>• 위락시설</li> <li>• 방송통신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창고시설</li> <li>•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li> <li>• 교육연구시설</li> <li>• 노유자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운동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li> </ul>
			권장	• 주상복합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3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비 고	•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5 특7	복합3 복합5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8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li> <li>•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li> <li>•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종교시설</li> <li>• 판매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li> <li>• 위락시설</li> <li>• 방송통신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창고시설</li> <li>•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li> <li>• 교육연구시설</li> <li>• 노유자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운동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컨벤션</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4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li>•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li> </ul>	

다.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특1 특2 특3 특4 특5 특6 특7	의1 의2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복합5	교통 처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li> </ul> </li> <li>•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li> <li>-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li>-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출입을 금한다.</li> </ul> </li> <li>•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계획구역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지하주차장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10%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며, ‘투수성포장’으로 함</li> </ul> </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lt;별표3&gt;을 따른다.</li> </ul>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면적률(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거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li> </ul> </li> </ul> <p>※ 생태면적률 = <math>\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um(\text{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math></p>
	유비쿼 터스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U-City 사업’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li> </ul>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별첨 1-마